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11.23(금)10:00

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을 지원하여 첨단화 및 경쟁력 제고

4. 주요내용

-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(안 제4조)
-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'은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을 지원하여 첨단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, 도내 뿌리산업의 현황 둘째, 비용추계서의 비용발생 요인으로 '충북뿌리산업협의회 분과운영 등 자립화 지원 방안'을 추진하는 이유와 지원내역 현황 셋째, 비용추계서의 비용 발생 요인 중 '유공자 해외전시회 참가 등 참가지원'에서 예상 대상국가 및 대상국가의 뿌리산업 발전 정도 넷째, 뿌리산업 분야가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으로 판단되는데 안 제13조제3호 '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'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함